의 안 번 호	제3640호

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7월 11일 김포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7월 21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2. 제안이유

❍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5. 2. 7.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(안 제2조 및 제3조)

나. 복합개발사업의 제안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
다.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(안 제6조)

라.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(안 제7조)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(안 제8조)

바.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(안 제9조)

사.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(안 제10조)

아.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차. 사업시행자의 관계서류 인계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**토론요지** : 생략

6. **수정안의 요지** : 없음

7. **심사결과** : 부결

8. **소수의견의 요지** : 생략

9. **주문사항** :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 지역 변경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이 조례로 위임되었으나, 본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포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특례 적용 시, 공공기여 시설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해 주시기 바라고

또한,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, 이는 타 정비사업 수준의 공공주택 확보를 목적으로(국민주택규모 공공 임대율 50%) 할 것인지, 또는 도심복합개발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을 30%)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김포시의 실정에 맞춘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조례안은 부결함.

10. **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 : 없음